

고도(古都) 및 고도 지정지구 현황

(기준일 2019.10.1.)

□ 고도 : 경주 · 부여 · 공주 · 익산,

□ 고도 지정지구

고도 지구 지정 현황

(단위 : 만㎡)

구분	경주 (2017.9월 변경)	공주 (2017.12월 변경)	부여 (2017.12월 변경)	익산 (2017.2월 변경)	계
특별보존지구	255.3	197.9	155.0	179.6	787.8
보존육성지구	105.3	154.8	125.3	128.9	514.3
계	360.6	352.7	280.3	308.5	1302.1

<근거 :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>

○ 법§제2조(정의)

1. "고도"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·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·부여·공주·익산,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○ 법§제10조(지구의 지정 등)

-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(이하 "지정지구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 1.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(이하 "보존육성지구"라 한다):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·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
 2.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(이하 "특별보존지구"라 한다):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

참고

지정지구 도면

경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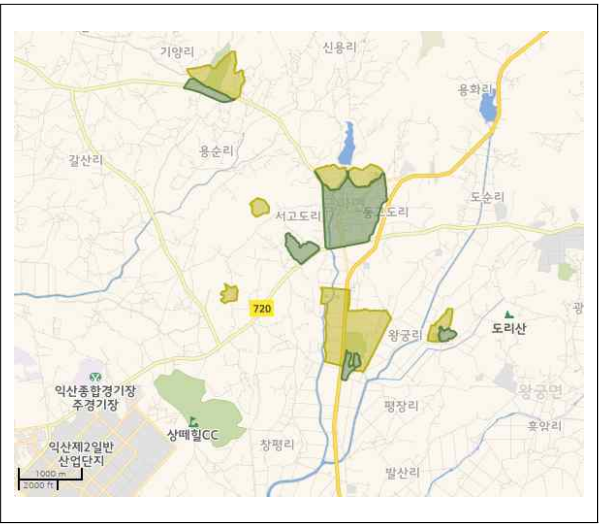
공주



부여



익산



■ 특별보존지구, ■ 보존육성지구